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최민규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559호
- 다. 발의일자: 2025. 3. 31.
- 라. 회부일자: 2025. 4. 2.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전기자동차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하 주차장 등 실내 공간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·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음.
특히, 차량 간 간격 부족, 피난시설 인근 설치, 감시·진압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화재 확산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,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는 인접 차량과 시설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.
- 현행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 및 안전 설비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.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 및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구조적 제약 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(안 제7조의3 제4항).
- 나. 안 제7조의3제4항 기준이 적용된 전용주차구역에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3제5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, 차량 간 간격 및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구조적 제약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”)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주차장 조례”), 「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”) 등 3개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세부적으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」는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의 종류·수량,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「주차장 조례」는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」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<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관련 조례 비교표>

구 분	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」	「주차장 조례」	「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」
목 적	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	「주차장법」 등의 위임 사항 규정	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
내 용	1. 충전시설 종류·수량 2. 전용주차구역의 수 3. 안내 표지판 설치기준	1. 전용주차구획 총 개수 2. 주차구획 설치기준 * 주차 구획선 :가로 2.5m×세로 5m 이상, 녹색 바탕, 흰색 실선과 문자	1. 화재 안전시설 설치기준 2. 안전시설 지원 3. 화재 대응 매뉴얼 4. 관계인에 대한 권고 ① 화재 대응·방지 기능 탑재 ②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, 과충전 방지 충전시설 설치 ③ 옥외 설치 또는 지하 설치시 램프 인근 설치

- 안 제7조의3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시 구역 간격은 지상 90cm, 지하 120cm 이상으로 하여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며,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고 피난 동선과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임.

이는 국내외 관련 지침¹⁾²⁾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견 없음.

다만, 개정 내용에 미뤄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,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보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「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」에 동 개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 및 운영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전기차 충전·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(서울소방재난본부, '24.12.02),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(부산소방재난본부, '22.05)

2) 실내 주차장: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드(영국)